

최종보고서

주요국의 지방세제도 현황
및 지방세정선진화 방안
연구

2024. 10.



◆ 研究責任者 ◆

김진태(중앙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 共同責任者 ◆

정성훈(대구가톨릭대학 교수·경영학·세무학 박사)

제 출 문

한국세무사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주요국의 지방세제도 현황 및 지방세정선진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중앙대학교 김진태 교수
공 동 연 구 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제2장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	4
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실적	4
가. 국세 납부실적 현황	4
나. 지방세 납부실적 현황	8
다. 국세 징수결정액 및 지방세 징수액 비교	11
2.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 영역	13
가. 취득세 과세대상 및 세율	13
나. 등록세	17
다. 그 밖에 지방세	20
제3장 주요국의 지방세 제도 현황 및 세무자문가 역할	29
1. 주요국의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실적	29
2. 주요국의 지방세 제도 현황	30
가. 일본	30
나. 독일	39
다. 미국	47
라. 호주	53
제4장 지방세에 있어서의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	58
1.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방안	58
가. 세무사 업무영역 및 교육	58
나. 세무사 이외 전문직역의 업무영역 및 교육	59

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61
라.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방안(세무사 전문분야 등록)	63
2.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64
가. 마을세무사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64
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직구성 및 업무의 차이	65
다. 세무사-지방세 세정공무원 간 협력모델	66
3.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방안	69
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	69
나.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방안	72
제5장 결론	75
1. 연구요약	75
2. 기대효과	77
참 고 문 현	78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국세 세수 현황	4
<표 2-2> 최근 5년 간 국세 세목별 징수결정액 현황	5
<표 2-3> 최근 5년 간 국세 세목별 수납액 현황	7
<표 2-4> 연도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8
<표 2-5> 최근 5년 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액 현황	9
<표 2-6> 최근 5년 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 현황	10
<표 2-7> 국세 징수결정액 및 지방세 징수액 비교	11
<표 2-8> 부동산 취득세 세율	14
<표 2-9>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및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세율	15
<표 2-10> 부동산 외의 취득세 세율	16
<표 2-11>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표준 및 세율	18
<표 2-12>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표준 및 세율	18
<표 2-13>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면허분) 면허 종류별 세율	20
<표 2-14>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과세단위 및 세율	21
<표 2-15>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	22
<표 2-16>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3
<표 2-17>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25
<표 2-18>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28
<표 3-1>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30
<표 3-2> 일본 지방세 체계	31
<표 3-3>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추이	33
<표 3-4> 독일의 조세 종류	39
<표 3-5> 독일 연방공화국의 세수 구성비율	40
<표 3-6> 미국의 연방세와 지방세	48
<표 3-7> 호주의 연방·주·지방정부	53
<표 3-8> 호주 지방정부의 조세	54

<표 4-1> 전문분야 등록 분류 및 전문분야별 요구 사전수임 건수	62
<표 4-2> 자치단체별 직접 부과징수 세목의 직접 정수 요건	66
<표 4-3>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70

그 림 목 차

<그림 2-1> 취득개념과 유형	13
<그림 3-1>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	29
<그림 3-2> 일본의 국·지방의 세입세출 (2022년도 결산)	34
<그림 3-3> 일본 지방세수의 추이	35
<그림 3-4> 일본 지방세수의 추이	36
<그림 3-5> 일본 지방세입 결산액 내역	37
<그림 3-6> 일본 지방세출 결산액 내역	38
<그림 3-7> 국가 세수의 징수 (2016년)	40
<그림 3-8> 미국의 주별 판매세율	50
<그림 3-9> 미국의 주·카운티 재산세	5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세심판원의 당해연도 조세심판청구 건수는 2017년 6,753건에서 2023년 16,781건으로 2017년 대비 144%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청구 건수는 2017년 1,187건에서 2023년 5,751건으로 384% 증가하여 전체 조세심판청구 건수 증가율 보다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 청구세액이 50억원 이상인 처리 건수(전년이월 + 당년 접수)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각각 27건, 36건, 62건, 77건, 79건, 7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청구의 건수와 청구세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시 세무법인 보다는 법무법인의 선임을 통한 소송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세 소송규모 상위 10개 사건에 대한 선임은 모두 법무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¹⁾

1) 2018년 지방세 소송규모(선고기준)

세목	원고	소송액 (백만원)	대리인	결과
가산세(지방세)	효성캐피탈	89,404	김앤장	원고승
취득세	그랑하우징	77,435	태평양	원고일부승
취득세	효성캐피탈	70,564	김앤장	원고승
취득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51,777	김앤장	원고승
재산세	호텔롯데	47,173	율촌	원고승
취득세	엘지전자	28,672	율촌	원고승
취득세	진성	27,986	새출	원고패
취득세	일송학원	20,673	광장	원고패
가산세(지방세)	애큐온캐피탈	17,098	김앤장	원고승
취득세	와이티엔	15,393	광장	원고일부승

주1)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원고 재판 데이터 분석

이는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지방세 분야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무사 자격 취득 이후 지방세 관련 업무보다는 국세 관련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폼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사의 지방세정 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 영역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지방세 제도를 파악함으로써 세무자문가의 역할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세 분야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2) 비즈니스워치 기사 참조(<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997329&volumeNo=17529777>)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무사의 지방세정 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와 유사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등의 해외 주요국의 지방세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해외 주요국의 지방세 분야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 증대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국세 및 지방세 통계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2장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

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실적

가. 국세 납부실적 현황

1) 연도별 국세 세수 현황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 징수결정액은 연도별 각각 325조 4,134억 원, 328조 6,943억 원, 324조 3,364억 원, 387조 6,166억 원, 440조 4,583억 원으로 2020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같은 기간 국세 수납액은 연도별 각각 283조 5,355억 원, 284조 4,127억 원, 277조 2,753억 원, 334조 4,714억 원, 384조 2,49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2020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각각 87.1%, 86.5%, 85.5%, 86.3%, 87.2%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 연도별 국세 세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	수납 비율 (B/A)
2018년	325,413,413	283,535,518	3,916,069	37,961,826	87.1%

2019년	328,694,287	284,412,645	3,749,274	40,532,368	86.5%
2020년	324,336,374	277,275,291	3,855,670	43,205,413	85.5%
2021년	387,616,581	334,471,443	4,366,051	48,779,087	86.3%
2022년	440,458,306	384,249,472	1,819,419	54,389,415	87.2%

주) 2023 국세통계연보 자료 참조

2) 연도별 국세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현황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국세 징수결정액은 연도별 각각 328조 6,943억 원, 324조 3,364억 원, 387조 6,166억 원, 440조 4,583 억 원, 400조 3,880억 원으로 2020년과 2023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징수결정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각각 89조 4,123억 원, 89조 1,410억 원, 97조 8,645억 원, 119조 1,706억 원, 134조 9,690억 원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 징수결정액은 연도별 각각 72조 3,148억 원, 73조 4,694 억 원, 56조 7,054억 원, 72조 737억 원, 105조 3,832억 원이며, 부가 가치세 징수결정액은 77조 9,277억 원, 77조 8,104억 원, 71조 9,807 억 원, 80조 5,175억 원, 90조 561억 원이다.

<표 2-2> 최근 5년 간 국세 세목별 징수결정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국세청 세수	440,458,306	387,616,581	324,336,374	328,694,287	325,413,413
내국세	410,795,811	351,019,537	296,287,263	302,928,315	299,360,565
소득세	134,968,931	119,170,573	97,864,445	89,141,035	89,412,342

법인세	105,383,150	72,073,713	56,705,368	73,469,359	72,314,829
상속세	7,978,178	7,313,628	4,145,981	3,286,859	3,028,591
증여세	7,350,562	8,392,583	6,851,411	5,514,276	4,935,796
부가가치세 ^{주2)}	90,056,061	80,517,511	71,980,609	77,810,403	77,927,660
개별소비세	9,716,393	9,806,242	9,537,799	10,097,422	10,785,183
주세	3,802,228	2,705,207	3,044,968	3,540,593	3,297,616
증권거래세	6,309,736	10,262,379	8,764,960	4,483,776	6,249,348
인지세	801,247	959,808	965,242	845,825	881,254
과년도 수입	44,429,325	39,817,893	36,426,480	34,738,767	30,527,946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1,720	16,631,175	13,973,840	14,608,085	15,384,056
방위세	964	343	237	334	340
교육세	4,705,115	5,174,859	4,765,487	5,184,250	5,154,682
농어촌특별세	5,853,866	7,699,530	5,155,150	2,848,306	3,273,376
종합부동산세	7,960,830	7,091,137	4,154,397	3,124,997	2,240,394

주1) 국세통계포털 연도별 예산 및 세수 현황 자료 참조

주2) 2010.1.1.부터 부가가치세의 5%(2014.1.1.부터는 11%, 2019.1.1.부터는 15%, 2020.1.1.부터는 21%, 2022.1.1.부터는 23.7%, 2023.1.1.부터는 25.3%)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국세 수납액은 연도별 각각 283조 5,355억 원, 284조 4,127억 원, 277조 2,753억 원, 334조 4,714억 원, 384조 2,495억 원으로 2020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수납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각각 84조 4,616억 원, 83조 5,620억 원, 93조 1,087억 원, 114조 1,123억 원, 128조 7,486억 원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 수납액은 연도별 각각 70조 9,374억 원, 72조 1,743억 원, 55조 5,132억 원, 70조 3,963억 원, 103조 5,704억 원이며,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70조 91억 원, 70조 8,283억 원, 64조 8,829억 원, 71조 2,046

억 원, 81조 6,266억 원이다.

<표 2-3> 최근 5년 간 국세 세목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국세청 세수	384,249,472	334,471,443	277,275,291	284,412,645	283,535,518
내국세	356,041,526	299,118,410	249,995,573	259,308,648	258,031,118
소득세	128,748,596	114,112,339	93,108,723	83,561,998	84,461,613
법인세	103,570,360	70,396,282	55,513,201	72,174,278	70,937,351
상속세	7,611,302	6,944,742	3,904,234	3,154,216	2,831,509
증여세	6,982,717	8,061,411	6,471,066	5,174,942	4,527,368
부가가치세 ^{주2)}	81,626,608	71,204,565	64,882,907	70,828,268	70,009,108
개별소비세	9,318,244	9,363,810	9,218,115	9,719,127	10,451,028
주세	3,766,531	2,673,378	3,008,381	3,504,110	3,260,915
증권거래세	6,302,867	10,255,631	8,758,656	4,473,313	6,241,198
인지세	798,775	959,756	965,206	845,588	881,254
과년도 수입	7,315,526	5,146,496	4,165,084	5,872,808	4,429,774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375	16,598,390	13,937,883	14,562,708	15,334,854
방위세	886	282	174	267	263
교육세	4,643,472	5,102,900	4,692,746	5,109,935	5,097,573
농어촌특별세	5,648,403	7,521,239	5,048,265	2,759,822	3,198,948
종합부동산세	6,798,810	6,130,222	3,600,650	2,671,265	1,872,762

주1) 국세통계포털 연도별 예산 및 세수 현황 자료 참조

주2) 2010.1.1.부터 부가가치세의 5%(2014.1.1.부터는 11%, 2019.1.1.부터는 15%, 2020.1.1.부터는 21%, 2022.1.1.부터는 23.7%, 2023.1.1.부터는 25.3%)를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함

나. 지방세 납부실적 현황

1) 연도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부과액은 연도별 각각 88조 8,733억 원, 94조 8,229억 원, 106조 1,662억 원, 116조 7,659억 원, 122조 9,199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액은 연도별 각각 84조 3,183억 원, 90조 4,604억 원, 102조 488억 원, 112조 7,984억 원, 118조 5,707억 원으로 부과액과 동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징수율(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각각 94.9%, 95.4%, 96.1%, 96.6%, 96.5%로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4> 연도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2018년	88,873,283	84,318,258	94.9
2019년	94,822,897	90,460,408	95.4
2020년	106,166,223	102,048,782	96.1
2021년	116,765,914	112,798,430	96.6
2022년	122,919,892	118,570,661	96.5

주) 2023 지방세통계연감 자료 참조

2) 연도별/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지방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부과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각각 23조 9,297억 원, 24조 377억 원, 29조 6,516억 원, 33조 8,178억 원, 27조 8,743억 원이다. 같은 기간 지방소득세 부과액은 연도별 각각 17조 2,676억 원, 18조 496억 원, 17조 4,491억 원, 20조 5,352억 원, 25조 50억 원이며, 지방소비세 부과액은 7조 4,624억 원, 11조 3,455억 원, 16조 5,692억 원, 17조 8,167억 원, 23조 9,305억 원이다.

<표 2-5> 최근 5년 간 지방세 세목별 부과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합 계	122,919,892 (100.0%)	116,765,914 (100.0%)	106,166,223 (100.0%)	94,822,897 (100.0%)	88,873,283 (100.0%)
취득세	27,874,331 (22.7%)	33,817,814 (29.0%)	29,651,560 (27.9%)	24,037,658 (25.4%)	23,929,680 (26.9%)
등록면허세	1,902,834 (1.5%)	2,162,005 (1.9%)	2,059,890 (1.9%)	1,844,982 (1.9%)	1,724,938 (1.9%)
례저세	840,521 (0.7%)	105,999 (0.1%)	168,640 (0.2%)	970,470 (1.0%)	1,016,437 (1.1%)
지역자원시설세	1,946,984 (1.6%)	1,870,968 (1.6%)	1,807,568 (1.7%)	1,708,145 (1.8%)	1,655,114 (1.9%)
지방소비세	23,930,466 (19.5%)	17,816,646 (15.3%)	16,569,227 (15.6%)	11,345,472 (12.0%)	7,462,377 (8.4%)
지방교육세	7,742,305 (6.3%)	7,800,230 (6.7%)	7,319,393 (6.9%)	6,869,687 (7.2%)	6,744,428 (7.6%)
주민세	2,563,669 (2.1%)	2,327,163 (2.0%)	2,164,867 (2.0%)	2,176,505 (2.3%)	2,042,584 (2.3%)
지방소득세	25,005,001 (20.3%)	20,535,178 (17.6%)	17,449,070 (16.4%)	18,049,561 (19.0%)	17,267,638 (19.4%)
재산세	16,593,677 (13.5%)	15,239,452 (13.1%)	14,053,272 (13.2%)	12,939,580 (13.6%)	11,795,547 (13.3%)
자동차세	7,761,604 (6.3%)	8,800,504 (7.5%)	8,584,860 (8.1%)	8,216,352 (8.7%)	8,403,303 (9.5%)

담배소비세	3,742,416 (3.0%)	3,627,145 (3.1%)	3,577,744 (3.4%)	3,357,713 (3.5%)	3,477,561 (3.9%)
도시계획세	-1 (0.0%)	-1 (0.0%)	-1 (0.0%)	-3 (0.0%)	-45 (0.0%)
과년도수입	3,016,085 (2.5%)	2,662,811 (2.3%)	2,760,133 (2.6%)	3,306,775 (3.5%)	3,353,721 (3.8%)

주1) 2023 지방세통계연감 자료 참조

주2) 괄호 안은 비율을 의미함

지방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각각 23조 8,135억 원, 23조 9,147억 원, 29조 5,363억 원, 33조 7,166억 원, 27조 7,15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지방소득세 부과액은 연도별 각각 16조 7,057억 원, 17조 4,260억 원, 16조 9,411억 원, 19조 9,573억 원, 24조 3,394억 원이며, 지방소비세 부과액은 7조 4,624억 원, 11조 3,455억 원, 16조 5,692억 원, 17조 8,167억 원, 23조 9,305억 원이다.

<표 2-6> 최근 5년 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합 계	118,570,661 (100.0%)	112,798,430 (100.0%)	102,048,782 (100.0%)	90,460,408 (100.0%)	84,318,258 (100.0%)
취득세	27,715,890 (23.4%)	33,716,588 (29.9%)	29,536,270 (28.9%)	23,914,677 (26.4%)	23,813,501 (28.2%)
등록면허세	1,895,991 (1.6%)	2,155,003 (1.9%)	2,052,871 (2.0%)	1,837,440 (2.0%)	1,718,217 (2.0%)
레저세	840,521 (0.7%)	105,999 (0.1%)	168,640 (0.2%)	970,470 (1.1%)	1,016,437 (1.2%)
지역자원시설세	1,914,662 (1.6%)	1,841,144 (1.6%)	1,777,278 (1.7%)	1,680,564 (1.9%)	1,625,542 (1.9%)
지방소비세	23,930,465 (20.2%)	17,816,646 (15.8%)	16,569,227 (16.2%)	11,345,472 (12.5%)	7,462,377 (8.9%)
지방교육세	7,520,374 (6.3%)	7,598,582 (6.7%)	7,135,758 (7.0%)	6,676,986 (7.4%)	6,543,877 (7.8%)
주민세	2,519,607 (2.1%)	2,282,900 (2.0%)	2,123,899 (2.1%)	2,129,574 (2.4%)	1,994,796 (2.4%)

지방소득세	24,339,424 (20.5%)	19,957,325 (17.7%)	16,941,135 (16.6%)	17,425,909 (19.3%)	16,705,657 (19.8%)
재산세	16,276,947 (13.7%)	14,974,323 (13.3%)	13,773,077 (13.5%)	12,677,115 (14.0%)	11,532,145 (13.7%)
자동차세	7,330,161 (6.2%)	8,354,610 (7.4%)	8,134,168 (8.0%)	7,725,108 (8.5%)	7,887,738 (9.4%)
담배소비세	3,630,418 (3.1%)	3,557,943 (3.2%)	3,577,744 (3.5%)	3,357,713 (3.7%)	3,477,561 (4.1%)
도시계획세	-1 (0.0%)	-1 (0.0%)	-1 (0.0%)	-3 (0.0%)	-45 (0.0%)
과년도수입	656,202 (0.6%)	437,368 (0.4%)	258,716 (0.3%)	719,383 (0.8%)	540,455 (0.6%)

주1) 2023 지방세통계연감 자료 참조

주2) 괄호 안은 비율을 의미함

다. 국세 징수결정액 및 지방세 징수액 비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 징수결정액은 연도별 각각 325조 4,134억 원, 328조 6,943억 원, 324조 3,364억 원, 387조 6,166억 원, 440조 4,583억 원이다. 같은 기간 지방세 징수액은 연도별 각각 84조 3,183억 원, 90조 4,604억 원, 102조 488억 원, 112조 7,984억 원, 118조 5,707억 원이다. 따라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각각 25.9%, 27.5%, 31.5%, 29.1%, 26.9%로 평균 28.2%이다.

<표 2-7> 국세 징수결정액 및 지방세 징수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국세	지방세	비율
2018년	325,413,413	84,318,258	25.9%
2019년	328,694,287	90,460,408	27.5%
2020년	324,336,374	102,048,782	31.5%
2021년	387,616,581	112,798,430	29.1%

2022년	440,458,306	118,570,661	26.9%
평균			28.2%

주1) 국세 징수결정세액 자료 : 2023 국세통계연보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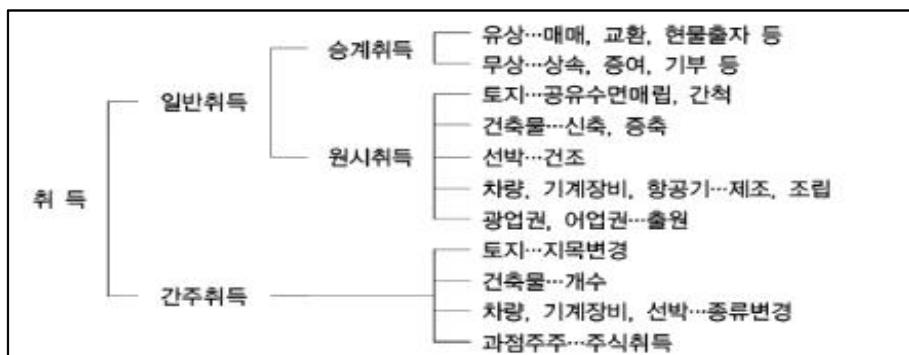
주2) 지방세 징수액 자료 : 2023 지방세통계연감 자료 참조

2.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 영역

가. 취득세 과세대상 및 세율

취득세에서 취득개념은 일반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된다. 일반취득의 경우 다시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구분되는데, 승계취득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의 유상취득과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취득이 있다. 원시취득은 공유수면매립, 간척과 같은 토지의 원시취득,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원시취득 이외에 선박 건조에 따른 원시취득, 차량·기계장비·항공기의 제조 및 조립에 따른 원시취득, 광업권 및 어업권 출원에 따른 원시취득 등이 있다. 또한 간주취득은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의 변경, 건축물 개수 등에 따른 간주취득이 있다. 이와 같은 취득개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취득개념과 유형²⁾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2) 2023 지방세통계연감, p.13 인용

포함)이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 및 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취득세의 징수방법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외국주소 9개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부동산,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및 사치성재산(고급주택·별장),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하여 각각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8> 부동산 취득세 세율

구 분		취득세	농·임·특별세 ^{주2)}	지방교육세 ^{주3)}	합계세율
주택 유상 거래	6억 이하	85m ² 이하	1%	비과세	0.1%
		85m ² 초과		0.2%	0.1%
	6억 초과 9억 이하	85m ² 이하	1~3%	비과세	0.1~0.3%
		85m ² 초과		0.2%	0.1~0.3%
	9억 초과	85m ² 이하	3%	비과세	0.3%
		85m ² 초과		0.2%	0.3%
	주택 외 유상거래(토지, 건축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0.2%	0.16%	3.16%
	그외	3.5%	0.2%	0.3%	4.0%
농지	매매	3.0%	0.2%	0.2%	3.4%
	상속	2.3%	0.2%	0.06%	2.56%
공유물 분할		2.3%	0.2%	0.06%	2.56%

주1)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14

주2) 취득세 표준세율(2%로 적용, 농특세법)의 10%, 단, 국민주택(85m² 이하)은 비과세

주3) 구등록세액(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주택의 경우, 표준세율(1~3%)에 50%를 곱한 세율의 20%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및 사치성재산(고급주택·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9>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및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세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주2)}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법인	12%	1.0%	0.4%	13.4%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3)}	8%	0.6%	0.4%	9.0%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4)}	12%	1.0%	0.4%	13.4%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다주택자 및 법인) ^{주5)}	12%	1.0%	0.4%	13.4%
사치성재산 (고급주택·별장)	법인	20%	1.8%	0.4%	22.2%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3)}	16%	1.4%	0.4%	17.8%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4)}	20%	1.8%	0.4%	22.2%

주1)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14

주2) [취득세 표준세율(2%로 적용, 농특세법) + (중과기준세율(2%) × 배수)]의 10%.

단, 국민주택(85m² 이하)은 비과세

주3)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

주4) 1세대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

주5)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제외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0> 부동산 외의 취득세 세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선박	등기·등록 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0.2%	0.1% 2.8%
		상속 외 무상취득	3.0%	0.2%	0.2% 3.4%
		원시취득	2.02%	0.2%	0.004% 2.224%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0.2%	0.004% 2.224%
		그 밖의 원인	3.0%	0.2%	0.2% 3.4%
	소형 선박	소형선박	2.02%	0.2%	0.004% 2.224%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0.2%	0.004% 2.224%
	그 밖의 선박		2.0%	0.2%	– 2.2%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비과세	4.0%
		그외	7.0%		7.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외	5.0%		5.0%
		영업용	4.0%		4.0%
		이륜자동차	2.0%		2.0%
	위 외의 자동차		2.0%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0.2%	0.2%	3.4%
	등록대상이 아닌 것		0.2%	–	2.2%
항공기	등록대상		0.2%	0.004%	2.224%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0.2%	0.002%	2.222%
	등록대상이 아닌 것		0.2%	–	2.2%
입목		0.2%	0.2%	–	2.2%
광업권·어업권		0.2%	0.2%		2.2%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0.2%	0.2%		2.2%

주)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15

나. 등록세

1)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대상 및 세율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등기·등록을 하게 된 원인의 실질적인 정당성,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등록을 한 자(외형상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자는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선박(선적항 소재지), 자동차(사용본거지), 건설기계(등록지), 항공기(정치장 소재지), 법인등기(주사무소 등 소재지), 상호(영업장 소재지), 광업권·조광권(광구), 어업권(어장), 저작권 등(주소지), 특허권 등(등록권자 주소지), 상표 등(주사무소), 영업허가(영업장), 지식재산권담보권(주소지)로 한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의 경우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동기의 경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1>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표준 및 세율

주1)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17

주2)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2>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표준 및 세율

등기별	원인별		세율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출자금액, 출자가액	0.4%
	자본·출자 증가	납입금액·출자가액	0.4%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40,200원

주1)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17

주2)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경우 대도시에 법인 설립·전입, 자본금 증가(설립·전입후 5년 이내), 지점 설치 등의 경우 부동산 등기 및 법인등기 세율의 3배를 중과세한다.

2)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및 세율

등록면허세(면허분)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의 면허를 받는 자이며,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부과하고,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및 규모는 총 960개로 제1종 237개, 제2종 202개, 제3종 266개, 제4종 208개, 제5종 47개이다.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3>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면허분) 면허 종류별 세율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기타 시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군	27,000	18,000	12,000	9,000	4,500

주)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18

다. 그 밖에 지방세

1) 레저세 과세대상 및 세율

레저세는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로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마(한국마사회법), 경륜 및 경정(경륜·경정법), 전통소싸움(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며,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이며, 세율은 10%이다.

2)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사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며 소비세(종량세)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하는 자,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자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와 국내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과세단위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4>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과세단위 및 세율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퀄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제4종 각련	1g당		36원
	제5종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연초 및 연초 고형물	궐련형 20개비	897원
			기타유형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주)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20

3) 지방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2023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74.7%는 국세, 25.3%는 지방소비세로 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사업자(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4) 주민세 과세대상 및 세율

주민세는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분 주민세를,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개인분(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1만원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에 대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로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5>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	5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m ² 초과 법인	250원/m ²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m ²)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 50억원	10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
기타	5만원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50% 가감)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50% 가감)	

주)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22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한

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이며, 세율은 0.5%이다. 다만, 최근 12개월 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세에 대하여 부과하며, 거주자의 국내·외 원천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내국법인의 국내·외 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6>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주)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24		

6) 재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본세와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분으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건축물, 주택에만 적용)을 곱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이다. 다만,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 자동차세(소유분) 과세대상 및 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이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³⁾이며, 자치단체 내 등록 및 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 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자

3)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동차, 그 밖에 주한회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7>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Panel A)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Panel B)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Panel C)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Panel D) 화물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Panel E) 특수자동차(견인차 등)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4) 수출된 자동차,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폐차되었음이 입증된 자동차,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매매용 자동차 등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Panel F)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주1)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28

주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8) 자동차세(주행분) 과세대상 및 세율

자동차세(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된다. 자동차세(주행분)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로 정유회사 및 유류수입자이다. 자동차세(주행분)는 교통세액의 26%(표준세율은 36%)이며, 휘발유은 137.5원/ℓ, 경유 97.5원/ℓ이다. 참고로 교통세는 유가 등락에 무관한 정액세 구조이다.

9)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세율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부존자원 보호·보전,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보 및 소방사무 소요 제반비용의 충당을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21년 이전까지 특정부동산분과 특정자원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소방분,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으로 개편되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때 건축물은 시가표

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43~45%)으로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0.04%에서 최대 0.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발전용수의 경우 발전용수로서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m³당 2원이다.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로서 먹는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온천용수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 채수된 물의 경우 200원/m³,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된 온천수의 경우 100원/m³, 기타 20원/m³을 과세표준과 세율로 하고 있다. 지하자원의 경우 지하자원으로서 채광된 광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채광된 광물가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 구분된다.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5,000원을 세율로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발전량 kWh당 1원을 세율로 정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발전량 kWh당 0.3원(2024년부터 0.6원)을 세율로 정하고 있다.

10) 지방교육세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이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7개 지방세 목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범위
취득세분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등록면허세분(등록분)	등록면허세의 20%	
레저세분	혜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50% 가감 조정 (레저세분 제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액)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시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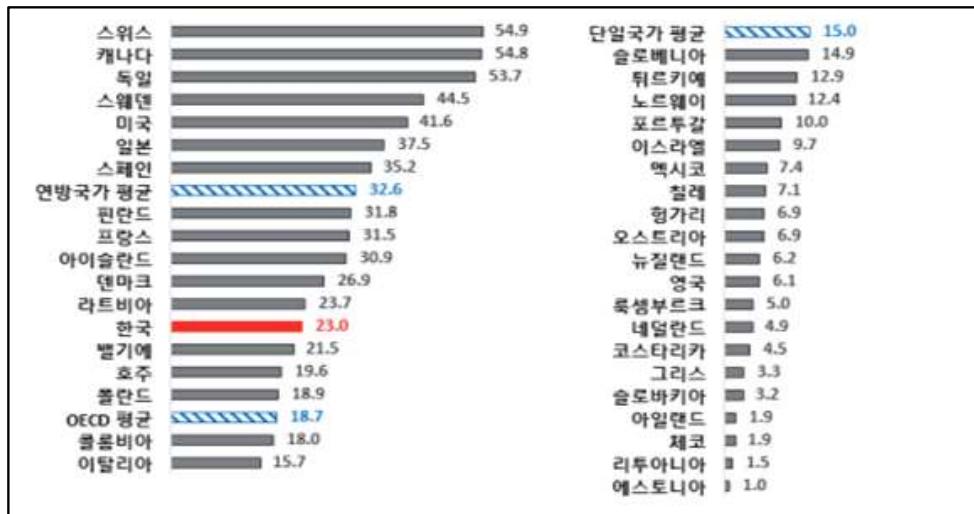
주)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세통계연감, p.36

제3장 주요국의 지방세 제도 현황 및 세무자문 가 역할

1. 주요국의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실적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0%이며, 이는 OECD 평균 비율인 18.7%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연방국가 8개국의 평균 비율인 32.6%, 단일국가 30개국의 평균 비율은 15.0%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간의 지방세 비중의 차이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⁵⁾



주1) 호주의 경우 2021년 기준임

주2) : OECD,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5) 김경민(2024),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116, p.4 재인용

2. 주요국의 지방세 제도 현황

가. 일본

1) 일본 조세제도

조세는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즉 세를 부과하는 자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정수된 조세가 국세이면 국가의 재원으로, 지방세이면 지방단체의 재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조세부담능력인 담세력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따라 개인소득이나 법인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과세, 재화나 서비스 소비에 대한 소비과세,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대한 자산과세로 크게 부결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세를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의 표로 정리해볼 수 있다.

<표 3-1>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구 분	국세	지방세
소득과세	소득세, 법인세	개인주민세, 개인사업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소비과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자동차중량세,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 석유석탄세 등	지방소비세, 지방담배세, 경유거래세, 골프장이용세, 입탕세, 자동차세, 경유자동차세, 수렵세 등
자산과세 등	상속세, 증여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부동산취득세, 사업소세 등

일본의 행정구역 체계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구정촌(市區町村)이며 교육, 복지, 소방·구급, 쓰레기 처리 등 일상생활에 친숙한 행정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는 이러한 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이 각각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일본 지방세는, 도부현이 부과하는 도부현세와, 시읍면이 부과하는 시읍면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세의 사용처에 따라 보통세(세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와 목적세(세의 용도가 특정되고 있는 것)로 구분된다.

<표 3-2> 일본 지방세 체계

시정촌세		도부현세	
목적세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입탕세	시정촌민세		도부현민세
사업소세	고정자산세		사업세
도시계획세	경자동차세	수렵세	지방소비세
수리지역세	시정촌담배세	수리지역세	부동산취득세
공동시설세	광산세	도부현법정외목적세	도부현담배세
택지개발세	특별토지보유세		골프장이용세
국민건강보험세	시정촌법정외		경유거래세
시정촌법정외목적세	보통세		자동차세
			광구세
			도부현법정외보통세
			고정자산세(특례분)

주) 일본총무성 홈페이지

일본의 지방세가 법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78년 부현(府縣)세의 법제화, 1888년에 시정촌세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후 샤우프 권고에 근거해서 지금의

지방세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보면 지방세의 과세 건수의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서 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부과되고 있다.

① 보통징수 : 부과과세의 대부분이 보통징수 방식으로 세를 모으고 있다. 보통징수에서는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를 하도록 한다.

② 특별징수 :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의 급여로부터 공제하는 형태로 세금을 맡기고, 정리해 납세를 하는 방법이다.

③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법이다.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세율의 정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세율, 일정세율, 임의세율의 3개가 있다.

표준세율은 지방단체가 통상 해야 할 세율로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재정상 그 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 이외의 설정도 가능하다. 다만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설정할 수 없다.

일정세율은 법률상 하나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지방단체는 그 이외의 세율을 정할 수 없다. 지방 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국세와의 합쳐서 수속상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임의세율은 표준세율도 일정세율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지방단체에 세율 설정을 맡긴 것이다. 과세 자체가 임의인 법정외세는 당연히 임의세율이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삼위일체의 개혁⁶⁾으로 세율에 변화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소비세는 1989년 4월 1일에 창설되었으며 세율은 3%로 모두 국세였다. 1997년 4월 1일에 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소비세가 창설되어 그 세율은 1%였다. 동시에 국세인 소비세의 세율은 3%에서 4%로 인상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을 결합하면 세금 소비세 합계의 세율은 5%가 되었다.

2014년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모두 세율이 증가하여 각각 6.3%, 1.7%로 총 8%가 되었다. 이후 8%에서 10%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기되어 2019년에 10%의 표준세율이 도입되었으며 이때 지방세율이 2.2%가 되었다. 이 때 표준세율과 함께 8%의 경감세율도 도입되었다.

<표 3-3> 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추이

시행일	소비세	지방소비세	국가와 지방 소비세 합계
1989.4.1	3%	0%	3%
1997.4.1	4%	1%	5%
2014.4.1	6.3%	1.7%	8%
2015.10.1	소비세율 10%로 인상 연기		
2017.4.1	소비세율 10%로 인상 연기		
2019.10.1. 표준세율	7.8%	2.2%	10%
2019.10.1. 경감세율	6.24%	1.7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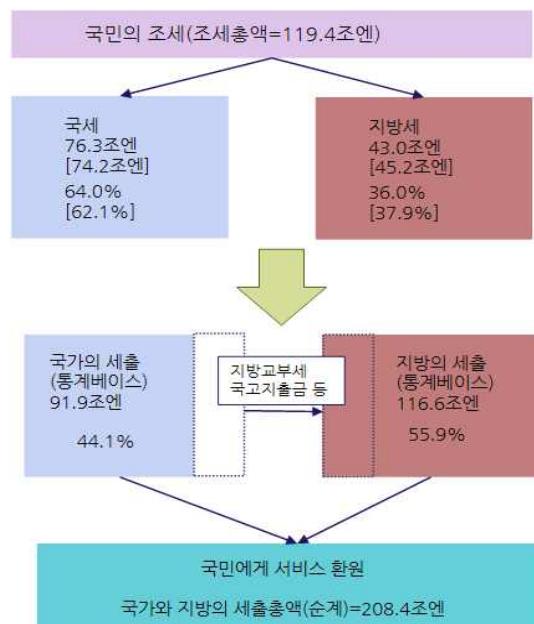
주) 関口博久(2017) 地方税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の一考察, THE REVIEW OF POLITICS AND ECONOMICS 29 (4), 1-24, 2017-12-25에서 발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세출

6) 三位一体の改革: 「지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라고 하는 이념하에, 나라의 관여를 축소해, 지방의 권한·책임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고 보조 부담금 개혁, 세율 이양, 지방 교부세의 재검토의 3개를 일체로서 실시하는 개혁을 말함

기준으로 보면 약 55.9%로 약 60%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세출 비율은 약 4:6이지만 조세 총액에서 보면 지방세의 비율이 36%, 국세의 비율이 64%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를 지방교부세나 국고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격차도 완화시키고 있다.

<그림 3-2> 일본의 국·지방의 세입세출 (2022년도 결산)



주) 정산증이므로 수치가 다를수 있음
 주) 지방세에는 초과각세 및 법정외세 등을 포함하지 않음
 주) 국세는 특별법인사업세를 포함, 지방세는 특별법인사업양도세를 포함하지 않음
 []안은 국세는 특별법인사업세를 제외, 지방세는 특별법인사업양도세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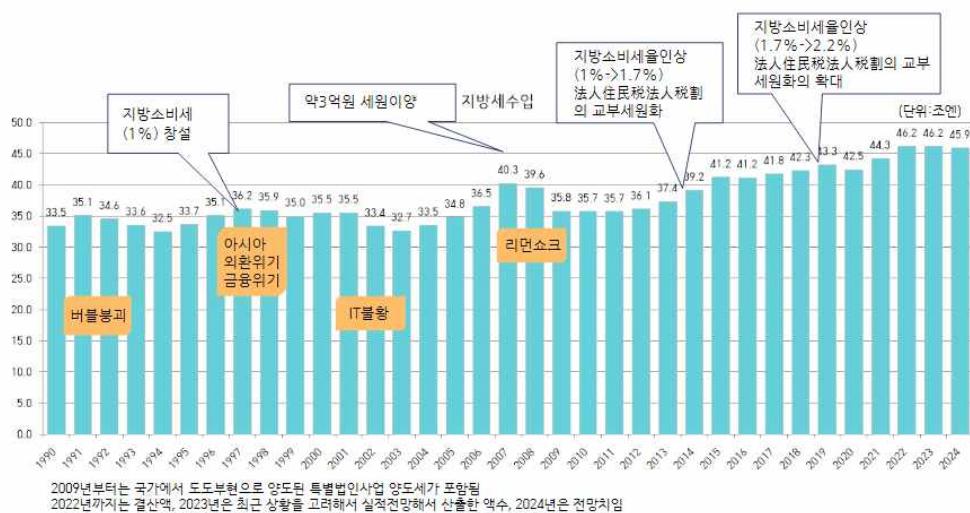
주) 일본총무성 홈페이지

2) 일본 지방세수 현황

일본 지방세수는 경기변동이나 각종 제도개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40조엔에서 45조엔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 지방

세수가 40조엔을 넘게 되는데 이는 3조엔의 세원이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세원이양은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를 줄이고,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를 늘림으로써, 나라로부터 지방에 세원을 옮기는 것입니다. 2005년 삼위 일체의 개혁 등을 통해 2006년 세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3조엔의 세원이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림 3-3> 일본 지방세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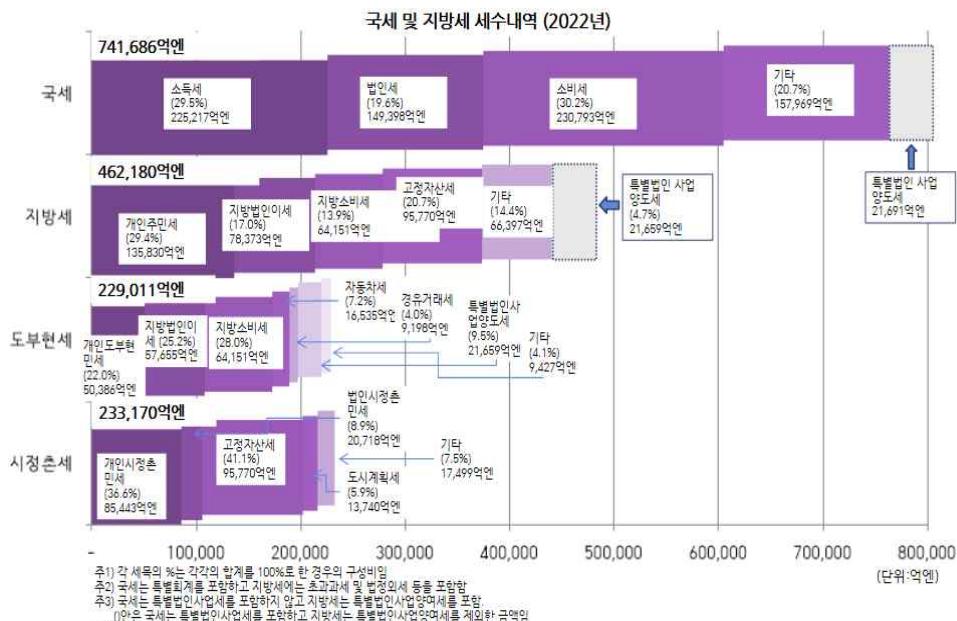
주) 일본총무성, 각년 지방세수입

세목에 따른 세수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도에 있어서의 국세·지방세의 세수 내역을 보면, 국세·지방세 모두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등 여러가지 세목이 조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 세수를 도도부현, 시정촌으로 나누어 보면, 도도부현 세수 총액은 약 23조엔이 되고 있다.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주민세(개인도부현민세), 지방방법인이세(地方法人二稅⁷⁾), 지방소비세가 각

각 약 22.0%, 25.2%,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목이 도도부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정촌 세수의 총액은 23조엔이다. 내역은 개인주민세(개인시정촌민세)가 수입 전체의 36.6%, 고정자산세가 41.1% 정도로 되어 있으며, 양세목이 세수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4> 일본 지방세수의 추이



주) 일본총무성, 각년 지방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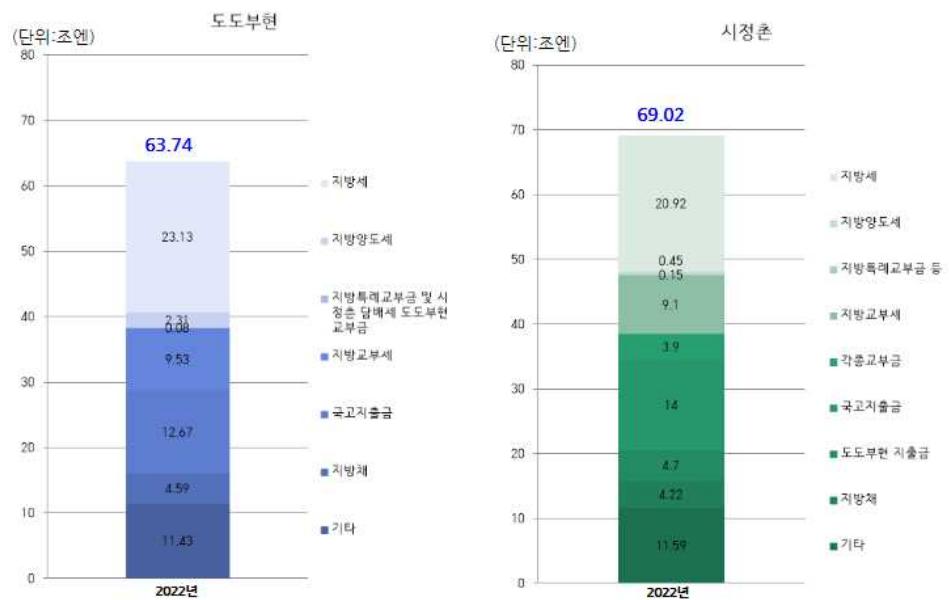
① 일본 지방세수의 세입

일본의 지방재정에서 세입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세입을 항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2022년도 지방단체의 세입의 합계는 130조엔을 넘고 있다.

7)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는 법인주민세와 법인사업세를 말함

이 중에서 지방세에 의한 수입은 약 44조엔으로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나 국고지출금 등의 이전 재원(국가에서 지방으로 옮겨지는 재원)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림 3-5> 일본 지방세입 결산액 내역



주) 일본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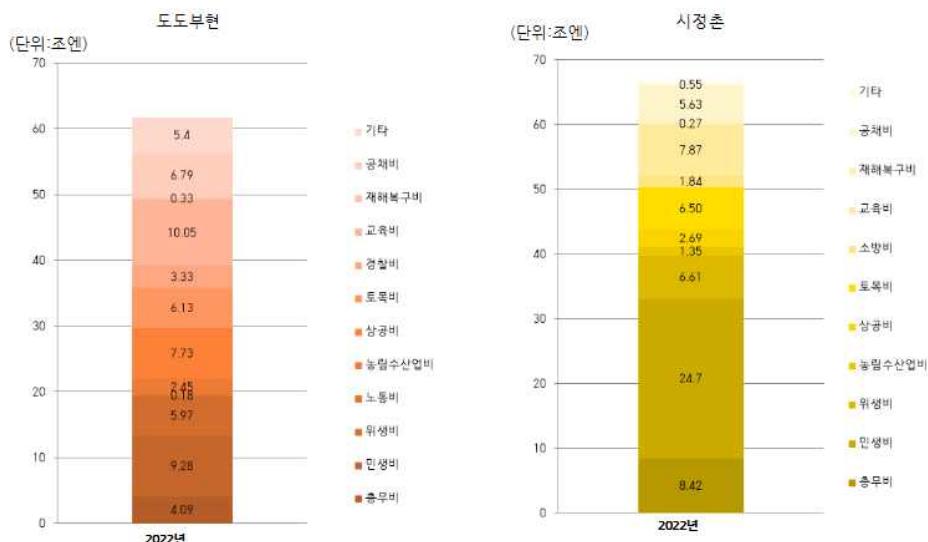
② 일본 지방세수의 세출

2022년도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세출을 나타낸 것이 <그림 3-6>이다. 경찰·소방이나 위생(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교육을 비롯한 주민에게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의 대부분을 지방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지방세가 필요한 것이다.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세출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총무비·민생

비·토목비·교육비 등 공통되는 항목이 있고, 한쪽에는 없는 항목도 있다. 도도부현 세출에만 있는 항목은 경찰비이고 시정촌 세출에만 있는 항목이 소방비이다. 즉, 경찰 행정은 도도부현이, 소방 행정은 시정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일본 지방세출 결산액 내역



주) 일본 총무성

나. 독일

1) 독일 조세제도

독일의 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공법상 단체의 종류에 따라 연방세와 주세, 계마인데세로 나눈다. 독일의 조세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공동세이다. 하나의 세목의 세수가 여러 공법상 단체

에 귀속되는 경우를 공동세라고 한다. 공동세는 연방에 가장 중요한 세원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연방하원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으며 공동세, 주세는 연방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게마인데세에서 부동산세와 영업세는 연방하원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게마에서 자체적인 입법이 가능하다.

<표 3-4> 독일의 조세 종류

공동세	연방세	지방세	
		주세	게마인데세
소득세	대부분의 소비세(담배세, 커피세, 에너지세, 삼폐인세 등)	재산세 토지취득세 상속 증여세 자동차세 경마 등 복권세 맥주세 소방세	영업세 부동산세 토지세 제2주택세 유·홍세 견세 등
법인세	보험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어음세		

독일의 세수 구성비율을 보면 연방이 289,018백만 유로로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자치단체는 각각 288,674백만유로, 98,783 백만유로로 40.8%, 14.0%이다.

<표 3-5> 독일 연방공화국의 세수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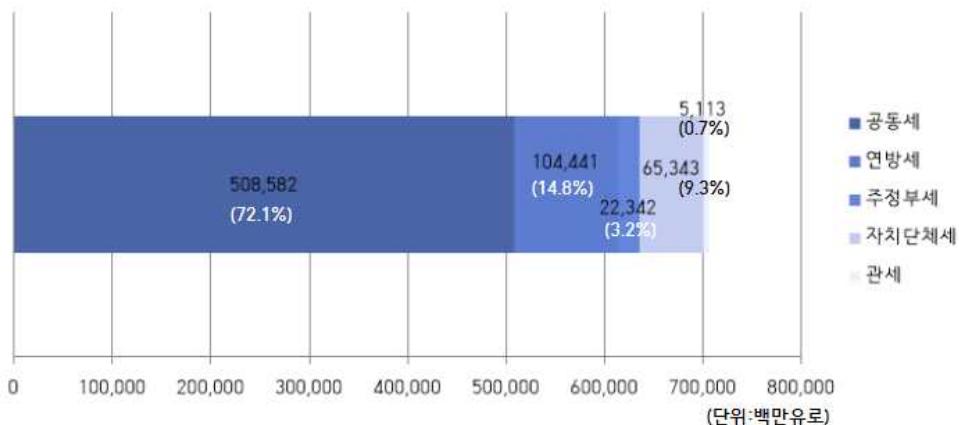
	세수(백만유로)	구성비율
연방정부	289,018	40.9%
주정부	288,674	40.8%
자치단체	98,783	14.0%
EU(분담금)	29,797	4.3%
합계	706,272	100%

주) 유태현(2018)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p27 인용

독일의 조세는 공동세,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는 각 행정기관에 고유의 세이지만, 공동세(Gemeinschaftsteuer)는 그 세수가 미리 정해진 비율로 연방, 주, 자치단체에 각각 배분된다.

2016년 독일의 세수 징수 현황을 보면 독일 세제의 특징인 공동세가 508,582백만 유로로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세는 14.8%, 주정부세는 3.2% 그리고 자치단체세는 9.3%이다.

<그림 3-7> 국가 세수의 징수 (2016년)



주) 유태현(2018)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p29 재편집

공동세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보면, 기본법에서 소득세, 범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3가지 세를 공동세라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는 자치단체에도 배분된다. 이들 세금은 일괄된 후에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금에 다른 비율로 각 행정 레벨에 배분된다.

공동세의 연방과 주(또는 자치단체) 간의 배분이 결정되면, 다음은 그것을 주(州)간(또는 자치단체간)으로 어떻게 나누는가가 문제가 된다. 공동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는 지역수입원칙(징세지 기준)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지역수입원칙이 아니라 인구기준과 재정력 기준을 바탕으로 각 주로 배분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그 관리는 연방의 재무관청이 실시하고 있어 주의 재무관청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수입의 원칙에 근거해 배분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하나는 소득세, 법인세의 주 재정권을 고려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예로부터 연방세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는 역사적으로 주에 귀속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에 대해 배려하면서 지역 수입의 원칙을 취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주(州)간 배분은 지역 소득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즉, 주세무서에서 정수한 금액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되게 된다. 단, 이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행해진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본사와는 별도로 영업소를 갖고 이를 통해 여러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때에는 기업이 본사 소재지에서 납세한 임금세는 거기에서 종업원의 거주지에 따라 각 주로 재분배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본사 소재지의 주에 수납된 후, 각 영업소의 존재하는 주에 재분배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소득세의 자치단체 취득분은 이러한 방법과 달리 인구비례에 가까운 형태로 배분된다. 우선 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소득세(전체의 15% 부분)는 지역수입 원칙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된다. 다음으로 주는 각 납세자가 지불한 소득세 중 과세소득의 구간에 따라 가중치를 주고 그 가중치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소득세를 배분한다. 납세자의 대부분은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배분 방법은 인구 비례로 자치단체에 배분했을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 독일 공동세

① 소득세(Einkommensteuer)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거주란 통상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세 대상은 국내외 전소득이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독일 국내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며, 최저세율은 14%, 최고세율은 45%로, 제로세율 적용최고한도액은 10,909유로이다(2023년).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고용주가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형태로 납부된다. 이것이 임금세(Lohnsteuer)이다. 임금세는 소득세의 선불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연말 조정 혹은 소득세 신고에 의해, 과불 지불 또는 부족액이 조정되게 된다.

②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독일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경영관리의 중심이 독일인 법인은 거주법인이 된다. 거주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거주법인은 특정한 국내원천소득,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독일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의 15%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 기업은 주(州)정부가 과세하는 영업세, 옛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세 등 추가 세금을 합쳐 과세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장기회법을 제출

했으며 이 법률안에 따라 시행될 경우 독일에서는 2028년까지 연간 약 70억 유로(약 9조9,000억 원)의 법인세가 감면된다⁸⁾.

③ 부가가치세(Umsatzsteuer)

인적과세대상은 모든 사업자로 자유업자나 수입업자도 포함된다. 또한 비거주자라도 독일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로 간주된다. 사업자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보험, 수출 등은 비과세이다. 일반세율은 19%로 식료품이나 서적 등은 경감세율의 7%가 적용된다.

3) 독일 연방세

① 담배세 (Tabaksteuer)

종량세와 종가세의 병용 방식이다. 세율은 종량세는 1개당 9.82센트, 종가세는 소매가격의 21.69%로 되어 있다. 납세 의무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다.

② 보험세(Versicherungsteuer)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에 대하여 부과된다(생명보험·건강보험 제외). 위험이 독일 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과된다.

③ 커피세(Kaffeesteuer)

원두 커피(콩), 커피 추출물 등의 제조·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④ 광유세 (Mineralölsteuer)

8) 세계법제정보센터(2023),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동력용 연료, 난방용 연료 및 윤활유로서의 석유 등에 부과된다.

⑤ 연대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

구 동독 부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소득세액·법인세액의 5.5%가 연대부가세로 징수된다.

4) 독일 주세

① 자동차세 (Kraftfahrzeugsteuer)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승용차이면 가솔린차, 디젤차별로 배출가스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노선버스에 대한 과세 면제, 전기차에 관련된 특례 등이 있다.

② 상속·증여세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상속세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부과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으로 상속세를 면제하기 위해 생전증여를 방지하는 세제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통 같은 취급으로 동일한 세율이 부과되고 수익자와의 혈연관계 및 자산가치에 따라 세율은 다르다.

③ 부동산 취득세 (Grunderwerbsteuer)

부동산 취득세는 독일 내 부동산(증서)을 취득할 때 과세된다. 계약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④ 경마, 복권세(Rennwett- und Lotteriesteuer)

경마세는 경마 주최자에 대하여 부과된다. 복권세는 공영 복권조

직에 부과된다.

⑤ 도박장 과징금(Spielbankabgabe)

공영 카지노의 영업에 대해 부과된다. 보통 매출총이익의 80%가 징수된다.

⑥ 맥주세 (Biersteuer)

1 plato (맥주의 주재료인 맥즙 추출물의 기본농도)에 1.54 마르크 (100리터당)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된다.

⑦ 교회세 (Kirchensteuer)

교회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교회의 활동비용에 충당된다. 교회의 소속원이면 교회 또는 주 세무관청을 통해 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8% 또는 9%의 교회세가 징수된다.

5) 독일 자치단체세

① 영업세 (Gewerbesteuer)

독일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농림업이나 자유업, 공적기관, 학교, 노인홈 등은 비과세로 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물세로서의 성격의 고려나 이중 과세의 회피로부터 몇개의 항목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영업 수익이 산출된다. 이 영업수익에 대해 영업세법에 정해진 조세 산정률(원칙 5%)이 곱해지고, 그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부과율(세율)을 정한다.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대도시일수록 부과율이 높고 중소도시일수록 낮다. 또한 영업세의 부과율은 단일화되어야 하며, 예를 들면

업종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② 부동산세 (Grundsteuer)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동산세 A와 부동산세 B의 두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세 A는 농업, 임업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세 B는 그 이외의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과세된다. 부동산의 평가는 평가법에 의해 산출된 통일가격을 이용한다. 통일가격에 부동산법에 의한 조세 산정률이 곱해져 그에 대해 시정촌이 부과율을 정한다. 조세 산정률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③ 지역적 개별세(örtlichen Verbrauch- und Aufwandsteuer)

지역적 개별세로는 개세(Hundestuer), 음료세(Gränkesteuer), 오락세(Vergnigungsteuer), 별장세(Zweitwohnungsteuer) 등이 있다.

개세는 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두 번째 부터는 세액이 상승한다. 개 수를 제한하고, 배설물의 청소 비용을 목적으로 징수된다.

모든 주에서 볼 수 오락세는 게임센터 등의 게임기계에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 등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내용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볼 수 있다. 음료세는 레스토랑 등에서의 맥주와 우유를 제외한 음료의 소비에 대해 과세된다. 별장세는 별장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된다.

다. 미국

1) 미국 조세제도

미국 세법에서는 세금을 연방세와 주세 및 도시세 등의 지방세로 나뉜다. 연방 개인소득세는 미국국세청(IRS)이 세법이나 기준을 정하게 된다. 주세 및 지방세는 각 주 및 시 등의 세무당국이 독자적인 세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에 따라 세제도 세율도 크게 다르다.

미국 연방세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유산·증여세, 소비세 및 관세와 함께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그리고 실업세 등이 있다. 소비세의 경우 주류, 유류, 담배 등에 연방세가 적용되고 이외 일부 제품에 목적세로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지방세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일반판매세와 주류 등 특정 제품에 대한 개별판매세가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외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주로 부과하며 판매세를 주정부 승인을 받아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는데 대부분 연방소득세에서 조정된 소득이나 과세소득을 과표로 한다. 일부 주에서는 소득세를 균일세율로 부과하지만 대부분은 누진과세를 한다. 법인세는 일부 주에서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연방정부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estate tax만 부과한다. 이에 반해 주정부는 사망한자로부터 상속받는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inheritance tax 또는 estate tax 중에 부과하거

나 또는 동시에 부과한다.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이다. 재산이나 부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real property)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표 3-6> 미국의 연방세와 지방세

세목	세율 구조	과표
연방세	개인소득세	누진 세법상 예외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공·면제한 금액(AGI)
	법인소득세	누진 입법규정은 해석 규정보다 상위
	유산세	누진 연간 과세대상 증여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증여세	누진 사망시 유산과 1976년 이후 과세대상 증여의 공정한 시장가치 (FMV)
	소비세 및 관세	일률 국산 및 수입품의 판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FICA/자가 고용실업세	역진 임금 및 자가소득(FICA: 6.2% on 84,500달러+1.45%, 15.3%)
지방세	실업세	역진 임금의 7,000달러
	일반판매세	일률 유형 개인자산이나 서비스의 소매가격
	개별판매세	일률 소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지방소득세	누진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의 조정된 총소득(AGI)
	주 영업세	일률 순가치, 소득 혹은 판매가액의 가중치(franchise tax)
	재산세	일률 개인 혹은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주) 장근호(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p68

연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이며, 개인소득세는 6단계로 나누어서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

주정부세는 하나의 독립된 과세권을 가진 주체로서 미국연방정부와 동일하게 주정부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를 과

세하고 추가로 재산세(property tax), 판매세(sales tax) 등을 부과한다. 지방정부세 중에서 판매세, 재산세, 연방소비세는 일률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2) 미국 지방세 : 판매세

판매세는 재화의 판매에 수반되는 조세로서 보통 5%~9%의 범위 내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다.

2024년 미국의 주별 판매세율을 보면 <그림 3-8>와 같다. 소매 판매세는 대부분 주의 세수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주 세금 징수의 32%와 지방 세금 징수의 13%(합산 징수의 24%)를 책임지고 있다.

45개 주는 주 단위 판매세(state-level sales taxes)를 부과하는 반면 알래스카를 포함한 38개 주에서는 주 단위가 아닌 지역 판매세(local sales tax)를 부과한다. 이러한 지역 세율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주 전체 판매세율이 적당한 일부 주는 실제로 다른 주에 비해 주 및 지역을 합산하여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주와 지역의 합산 판매세율의 평균이 가장 높은 5개 주는 루이지애나(9.56%), 테네시(9.55%), 아칸소(9.45%), 워싱턴(9.38%), 앨라배마(9.29%)이다. 평균 합산 세율이 가장 낮은 5개 주는 알래스카(1.82%), 하와이(4.50%), 와이오밍(5.44%), 메인(5.50%), 위스콘신(5.70%)이다.

주의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7.25%이며, 인디애나, 미시시피, 로드아일랜드, 테네시의 4개 주는 7%로 두 번째로 높은 주 단위 세율을 보여준다. 0이 아닌 가장 낮은 주 단위 판매세율은 콜로라도로 2.9%이며, 앨라배마, 조지아, 하와이, 뉴욕,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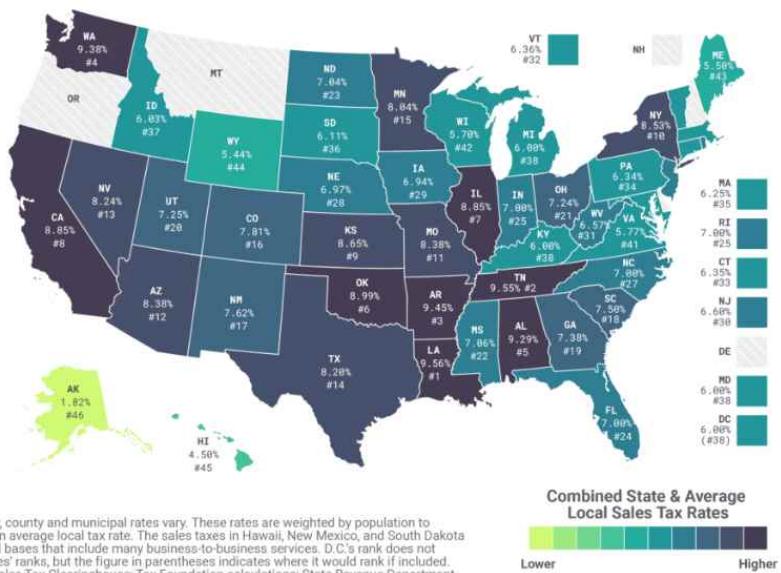
이오밍의 5개 주는 4%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평균 지방 판매세율이 가장 높은 5개 주는 앨라배마(5.29%), 루이지애나(5.11%), 콜로라도(4.91%), 뉴욕(4.53%), 오클라호마(4.49%)이다.

<그림 3-8> 미국의 주별 판매세율

How High Are Sales Taxes in Your State?

Combined State & Average Local Sales Tax Rates, January 2024



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세수원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방정부는 학교, 도로, 경찰서,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 거주 및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액의 72.5%가 재산세다.

재산세를 주 전체에서 서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국 각 카운티의 재산세 중앙값을 살펴보도록 한다. 납부한 재산세 중앙값은 50개 주 내에서 매우 다양하다. 2022년 미국 전역에서 납부한 재산세의 평균 수준은 \$1,815(표준편차 \$1,388)였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재산세 청구서는 10개 카운티이며 재산세 중앙값이 연간 \$250 미만이다.

앨라배마의 9개 카운티, 루이지애나의 4개 카운티, 뉴멕시코의 하딩 카운티, 노스다코타의 수 카운티, 웨스트 버지니아의 맥도웰 카운티 모두 재산세 중앙값이 300달러 미만으로 청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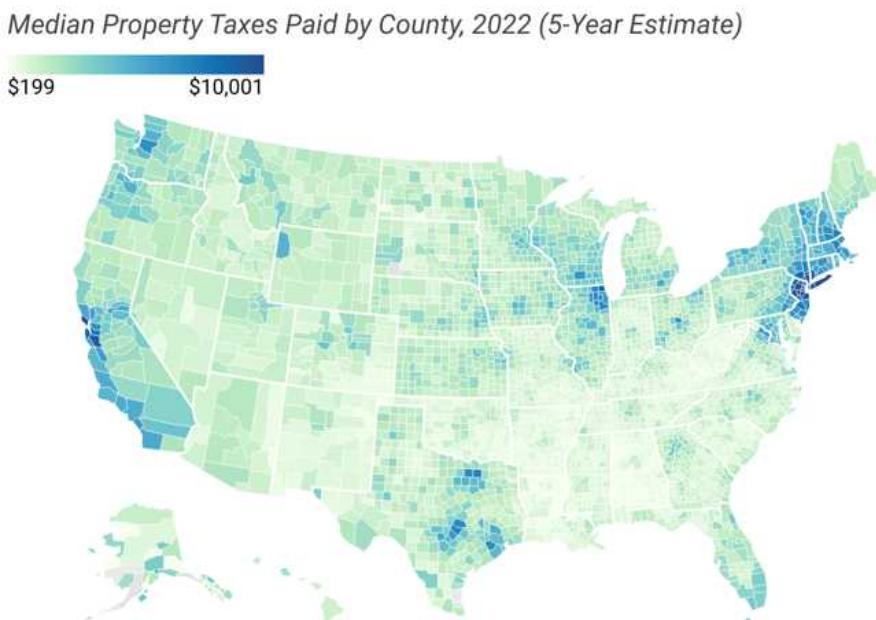
중간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높은 15개 카운티는 모두 \$10,000를 초과하였다. 캘리포니아의 마린 카운티, 뉴저지의 Bergen, Essex, Hunterdon, Morris, Passaic, Somerset 및 Union 카운티, 뉴욕의 Nassau, New York, Putnam,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 버지니아의 폴스 처치 시티이다. 폴스처치(Falls Church)와 마린 카운티(Marin County)를 제외하고 모두 뉴욕시 근처에 있다. 또한 뉴저지의 3개 카운티,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코네티컷의 서부 코네티컷 계획 지역 모두 재산세 중앙값이 \$9,000 이상 청구되었다.

재산세 납부도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은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의 재산세 중앙값은 Choctaw 카운티의 경우 \$222 미만이고 Jefferson 카운티(버밍엄-후버 대도시 지역의 중앙 카운티)의 경우 \$1,282이며 평

균 세금 고지서는 \$485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버지니아에서는 재산 세 중앙값이 Dickenson 카운티의 경우 473달러부터 Falls Church City(워싱턴 대도시 지역의 일부)의 경우 \$10,000 이상이며 평균 세금 고지서는 \$1,893이다.

재산세 중앙값이 높은 지역이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맨해튼(뉴욕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쿡 카운티), 마이애미(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재산세 중앙값은 해당 주 평균보다 2~3배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 도심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설명된다. 재산세는 주택 가치의 백분율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서는 더 높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림 3-9> 미국의 주·카운티 재산세



Note: Missing values are due to small sample sizes in low-population counties.
Source: US Census Bureau, 2022 American Community Survey, dataset B25103.

TAX FOUNDATION

주) Tax foundation

라. 호주

1) 호주 조세제도

호주 정부체계는 연방정부(Federal Gov), 주정부(State Gov), 지방정부(Local Gov)의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세무, 관세, 연금 분야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있다. 세제일률주의(Uniform Tax Case)에 의해 연방정부가 주요 세금을 징수하며 징수된 조세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분배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표 3-7> 호주의 연방 · 주 · 지방정부

연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세 : 법인세, 개인소득세, Capital Gain Tax, 탄소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GST), Fringe Benefits Tax(급여이외 혜택)
주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세 : 급여세(Payroll Tax), 인지세(Stamp Duty), 토지세(Land Tax) 등○ 목적세 : 주차장부담금(Parking Space Levy) 등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Property Rates)○ 쓰레기처리비용(Waste services charge)○ 폭우관리비용(Stormwater charge)○ User Charges and fees

안종석(2012)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2008년에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을 발간하여 호주의 조세체계와 이전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목은 125개 이상이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연방정부 세목이 99개이고 주정부 세목이 25개이다. 그리고 주정부 산하의 지방정부 세목은 1개이다.

<표 3-8> 호주 지방정부의 조세

세목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및 과세점
주정부조세		
급여세	대다수 형태의 종업원 급여를 포함한 고용주의 지불급여 총액	월별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주가 State Revenue Offices에 납부
등록인지세	양도된 자산의 가치	인가된 법률 및 회계기업, 금융기관 또는 직접 공탁(direct lodgement)을 통해 새로운 구매자가 State Revenue Offices에 납구
자동차세	양도된 자동차의 가치 및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기타 수수료	자동차의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한 후 운전자 등록
도박세	복권, 도박 기계, 카지노, 경주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도박으로부터 발생한 일반적인 "도박꾼 손실(player loss)"	도박 규정 관련 위원회에 지불하고 있는 빅토리아 주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에서는 인가를 받은 사람(licensees)이 (일반적으로 월별 신고서를 통해) State Revenue Offices에 납부
토지세	일반적으로 주된 거주지 및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미개발가치(unimproved value)	적정한 토지소유자가 State Revenue Offices에 의해 별행된 연차 결산 보고서(annual account)를 통해 납부
보험세	보험료 (insurance premiums) 및 보험정책	일반적으로는 보험업자가 월별 신고서에 의해 State Revenue Offices에 납부 단, 빅토리아 주의 보험회사는 부과금을 직접 대도시 및 지방 소방대(metropolitan and country fire brigades)에 납부
기타조세	일련의 기타 부과금 및 금융거래세 포함	
지방정부조세		
지방레이트	자산의 가치, 레이트는 관할구역 및 토지 유형에 따라 변동. 몇몇 관할구역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세 역시 지방정부 세입에 포함	자산 소유자가 지방정부 당국에 의해 별행된 연간 레이트 고지서(annual rates notice)를 통해 납부

주) 안종석(2012), 주요국의 재산세제도 -호주편 -, 한국조세연구원, p49

2) 호주 주정부세

① 급여세 (Payroll Tax)

한 달간 지급한 총 급여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개인 또는 법인이 OSR(Office of state Revenue)에 등록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장애인 고용시 세금 환급제도가 적용된다. 급여세는 일정액수를 넘어가면 세금을 부가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금이므로 많은 기업체들이 직접 고용을 꺼리게 되었다. 고용유발이 적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급여세의 부담이 적고, 고용이 많은 산업은 급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급여세가 주요한 세금재원이므로 일시에 없앨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NSW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급여세에 대해서 세법상의 급여가 \$1.2 million 이상에 대해서 세율을 기존의 5.45%에서 4.85%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의 \$1 million에서 \$200,000만큼 면세구간을 확대한 것이며 세율 역시 인하된 것이나 세율 인하는 한시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시 5.45%가 적용되었다.

② 인지세 (Stamp Duty)

인지세는 부동산, 차량, 금융 및 자본거래에 과세하며 부동산(주거용, 상업용 포함)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2개월이내(NSW주) 매수인이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취득 부동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같은 가격 부동산이라도 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인지세는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호주의 인지세는 약 5.5%이며, 비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호주 부동산을 구

입할 시 외국인 인지세가 8%가 추가된다.

③ 토지세(Land Tax)

NSW주는 Office of State Revenue라는 주정부 기관에서 토지세 관련 업무를 보는데 이곳에서 지정한 평가원(The Valuer General)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용도, 위치 등을 고려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④ 주차장 부담금 (Parking Space Levy)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위치한 주차 공간에 대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상업지구 및 사무실 주차공간, 주차장(Parking stations)내 주차공간, 자동차 주차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등이 과세대상이다.

3) 호주 지방정부세

호주 기초자치단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간의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① 재산세 (Property Rates)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방정부(Council)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가치와 부동산 분류(Category)를 기반하여 부과한다.

② 쓰레기 처리비용 (Waste services charge)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Rates)를 납부시 청소 및 재활용 처리비용이 포함된 쓰레기(Waste)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폭우 관리비용 (Stormwater charge)

부동산 소유자는 시드니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또는 추가적으로 폭우관리 시스템 제공을 위한 비용인 폭우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폭우관리시스템은 거리, 운하, 상수도, 개천 등에서 Sydney Harbor와 Cooks River로 유입되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주거용 토지소유자에게는 연간 \$25를 그리고 부동산 관리회사에게는 연간 \$12.50를 부과한다.

④ User Charges and fees

지방정부법 제608조에 근거하고 해서 지자체가 각종 서비스 및 재화, 용역 및 인허가 제공시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신·개축 등) 신청 수수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도로점용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 금액은 시의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4장 지방세에 있어서의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

1.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방안

가. 세무사 업무영역 및 교육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와 관련된 행위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⁹⁾

-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③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④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⑤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 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⑦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

9) 세무사법 제2조 각호 참조

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⑧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⑨ 그 밖에 ①부터 ⑧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¹⁰⁾ 다만,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¹¹⁾ 또한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¹²⁾

나. 세무사 이외 전문직역의 업무영역 및 교육

1) 공인회계사 업무영역 및 교육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직무범위로 정하고 있다.¹³⁾

공인회계사의 경우 1년차 수습과정을 거치게 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및 공인회계사 개업이 가능하며, 2년차 수습과정을 거치게 되면 외감법에 의한 감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2년차 수습과정

10)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11)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12)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13) 공인회계사법 제2조

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감사반 및 금융감독원의 외부 감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은 1년이며, 기타수습기관을 거치는 경우 2년의 연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수습 회계사의 연수과정은 단순히 연구과정을 끝내는 것이 아닌 실무 과정 연수(100시간)와 종합평가시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¹⁴⁾

공인회계사의 경우 등록 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이수 방법은 회계연수원, 회계법인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변호사 업무영역 및 교육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¹⁵⁾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되어,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¹⁶⁾

14) 1년차 과정은 “공인회계사 과정”, 2년차 과정은 외부감사 과정으로 분류하는데, 공인회계사 과정의 경우 회계연수원의 기본 실무 과정 연수 100시간 및 종합평가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외부감사 과정의 경우 회계연수원 외부감사 실무 과정 연구 100시간 및 종합평가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15) 변호사법 제3조

16) 변호사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참조

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⁷⁾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전문분야를 62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¹⁸⁾

전문분야에 대한 등록 요건은 (1)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이 대한변호사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¹⁹⁾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3)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²⁰⁾

전문분야 등록 분류 및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는 다음과 같다.

17)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조

18)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19) 제12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가 제8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박사 학위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연수 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교육시간을 인정한다

20)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각호

<표 4-1> 전문분야 등록 분류 및 전문분야별 요구 사건수임 건수

전문분야	사건수임 건수	전문분야	사건수임 건수
민사법	30건	공정거래	25건
부동산	30건	방송통신	10건
건설	30건	현법재판	10건
재개발·재건축	30건	환경	10건
의료	25건	에너지	10건
손해배상	30건	수용 및 보상	25건
교통사고	30건	식품·의약	25건
임대차관련법	30건	노동법	20건
국가계약	20건	산재	20건
민사집행	30건	조세법	20건
채권추심	30건	법인세	20건
등기·경매	30건	관세	20건
상사법	30건	상속증여세	20건
회사법	20건	국제조세	10건
인수합병	20건	지식재산권법	20건
도산	30건	특허	20건
증권	25건	상표	20건
금융	25건	저작권	20건
보험	30건	영업비밀	20건
해상	10건	엔터테인먼트	20건
무역	20건	국제관계법	10건
조선	10건	국제거래	20건
중재	10건	국제중재	10건
IT	10건	이주 및 비자	10건
형사법	30건	해외투자	20건
군형법	30건	스포츠	10건
가사법	30건	종교	10건
상속	20건	성년후견	10건
이혼	30건	스타트업	10건
소년법	30건	학교폭력	10건
행정법	25건	입법	10건

주)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

이처럼 변호사는 전문분야를 세분화하고, 경력, 연수 및 교육 이수, 사건수임 건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분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라.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방안(세무사 전문분야 등록)

현행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있어 조세와 관련된 전문분야는 조세법, 법인세, 관세,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세 관련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은 특정 변호사가 해당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된다.

반면, 세무사의 경우 전문분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무사의 전문분야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무사의 전문분야 등록은 조세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특정 부분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의 전문분야는 국세 또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신고,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등의 세무대리의 대상을 기준으로도 전문분야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무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제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규정을 통해 전문분야 등록에 대한 요건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등록 분류, 전문분야별 대리업무 건수, 대리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적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가. 마을세무사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현재 세무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모델은 마을세무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 먼저 마을세무사 제도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지원대상 불복절차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 및 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하다. 따라서 법인과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또한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마을세무사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협력 모델로 세무사-지방세 세정공무원 간의

협력 모델을 아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지방세 세정공무원 간의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

나. 지방자치단체별 조직구성 및 업무의 차이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은 자치단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무국에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를 각각 두고 있는데, 세무조사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징수와 관련된 업무는 38세금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에 세정과와 조세정의과를 두고 있는데, 세무조사와 체납 관련 업무를 모두 조세정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용인특별시청의 경우 재정국에 세정과와 징수과를 두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세정과에서 체납 관련 업무는 징수과에서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업무는 담당부서 이외에 지방세의 직접 부과징수 세목에 대한 체납 지방세의 직접 징수 요건 또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직접 징수 요건은 과년도 체납시세 중 1건당 1,000만원 이상인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5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직접 부과징수 세목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리스 및 렌트업체의 차량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직접 부과징수 세목으로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표 4-2> 자치단체별 직접 부과징수 세목의 직접 징수 요건²¹⁾

구 분	직접 부과징수 세목	체납 지방세 직접 징수 요건
서울특별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과년도 체납시세 중 1건당 1,000만원 이상
부산광역시		과년도 체납시세 중 1건당 500만원 이상
인천광역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리스 및 렌트업체의 차량 취득세	납부기한 후 3개월 경과 현 과세연도 체납시세 중 고지서 1매당 50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과년도 체납시세
대구광역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과년도 체납시세 중 1건당 500만원 이상
대전광역시		과년도 체납시세 중 1건당 100만원 이상
광주광역시		납부기한 후 3개월 경과 현 과세연도 체납시세 중 고지서 1매당 1,0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시세 중 1인당 300만원 이상
울산광역시	지방소비세	없음
도		없음

다. 세무사-지방세 세정공무원 간 협력모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은 자치단체별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기획재정

21) 정승영(2017)연구 참조

부 또는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 세정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과거 조선업 위기에 따른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업 위기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정 공무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선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정공무원들의 고민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인력구조 개선 등의 개별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 정책을 도입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방세 정책은 지방세의 실무적 부과 및 징수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방세원 관리와 지역경제 및 사회기반 실태와 투자 수요까지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세정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고려된 교육 및 세미나도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적 지방세 정책의 이행과 세정공무원의 교육 및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무사는 특정 지역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이나 인구 및 노동

(노동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세전문가로써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어떤 부분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와 지방세 세정공무원 간 협력모델이 마련된다면,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무사-지방세 세정공무원 간 협력모델은 세무사-지방세 세정공무원 간의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진행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전국적으로 7개의 지방세무사회와 128개의 지역세무사회를 조직화하여 운용하고 있다.²²⁾ 2024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자치시 75개, 자치군 82개, 자치구 69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세무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전문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무사-지방세 세정공무원 간 협력모델은 지방세무사회 또는 지역세무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정공무원과의 교육, 세미나,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이다. 교육, 세미나, 토론회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으며, 특정 지방세 이슈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다.

22)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서울지방회 28개, 중부지방회 24개, 부산지방회 16개, 인천지방회 15개, 대구지방회 14개, 광주지방회 15개, 대전지방회 16개가 조직되어 있다.

3.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방안

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²³⁾

성실신고확인이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규모 임대법인 등(개인성실신고 대상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는 3년간 만)이 법인세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²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3조 제1항에 근거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3) 김진태 등(2019), “장부작성 대행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 pp.51- 수정 후 재인용

24) 소득세법 제70조2 제1항

<표 4-3>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업 종 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가공비용 계상 등 불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납세성실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세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익년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는 미리 당해 연도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여 법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법 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및 116조(지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²⁵⁾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²⁶⁾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²⁷⁾
- ②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²⁸⁾'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

25)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를 포함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1항).

26)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27)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8)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세무검증 직무수행 중에 고의·과실이 있는 세무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맡기려면 제대로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세무대리인으로써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⁹⁾

나.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방안³⁰⁾

과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한 탈세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탈세행위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검증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1년 4월 5일 국회 본의회에서 세무대리인이 조세신고 전 사업자에 대한 가

29) 김진태 등(2019), “장부작성 대행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 p.75.

30) 김진태 등(2019), “장부작성 대행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 pp.51- 수정 후 재인용

공경비 계상여부 등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국세기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세무사법개정안 등 법률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2018년부터는 법인에 대해서 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가공비용 계상 등 불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납세성실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세관청의 인력 한계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다.

반면, 현재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신고에 있어 불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국세청 보다 상대적으로 인력 한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방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4년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편입되고, 소득세 및 법인세에 10%의 단일세율로 부가되던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감면을 달리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개편되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모두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부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행정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부분에 대한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중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2023년부터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취득세 계산시 납세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오류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세행정비용이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대한 성실긴고 확인제도 또한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복잡한 취득세 계산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액에 대한 신뢰성 부족에 따른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최근 지방세 관련 소송에 있어 세무사 및 세무법인 보다는 법무법인의 선임을 통한 지방세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대리인의 역할 측면에서 본다면, 세무사가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사의 지방세정 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방안,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방안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방안으로 현행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과 유사한 세무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제안하였다. 세무사의 전문분야 등록은 조세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특정 부분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무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제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규정을 통해 전문분야등록에 대한 요건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등록 분류, 전문분야별 대리업무 건수, 대리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적 확인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세무사의 경우 보수교육에 있어 전문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으로 세무사-지방세 세정공무원 간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가 해당 지역의 세무사와 세정공무원을 통해 마련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전국적으로 7개의 지방세무사회와 128개의 지역세무사회를 조직화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전문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즉, 지방 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정공무원과의 교육, 세미나,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개선점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가공비용 계상 등 불성실신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납세성실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과세관청의 인력 한계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행정비용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관련 영역에 있어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신고납부의 형태가 아닌 정부부과 지방세 항목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의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납부금액이 큰 취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기대효과

본 연구는 지방세정 선진화 방안으로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 방안,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 지방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방안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화 방안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의 감소 및 조세저항의 감소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방세 전문세무사 양성을 통해 납세자는 본인의 조세부담이 지방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자의 조세저항은 감소될 것이다.

지방세 세정공무원과의 세정 선진화 협력 방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노동구조 대응, 지역소멸 문제의 해소 등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분야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행정비용이 감소될 것이며, 인력 한계로 인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였던 다른 분야에 대한 인력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김유찬(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김진태, 권해숙, 신승근(2019), “장부작성 대행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사회적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
안종석(2012), 주요국의 재산세제도 - 호주편 -, 한국조세연구원
유태현(2018), 지방세 공동세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이동식(2012), 주요국의 제산세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장근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I),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장근호(2011),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한국조세연구원
장근호(2011),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II), 한국조세연구원, 2011.4.
정승영(2017), 지방세 행정권 발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과제 2017-02
호
한국시도지사협의회(2013) 호주정부 구조 및 국세 · 지방세 관한 연구

<국외 문헌>

關口博久(2017)地方稅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の一考察, THE REVIEW OF
POLITICS AND ECONOMICS 29 (4), 1-24, 2017-12-25

<홈 페이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www.tasis.nts.go.kr) 국세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WETAX(www.wetax.go.kr/) 지방세통계연감 연도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index.html>

<신문기사>

비즈니스위치(<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997329&volumeNo=17529777>)